

## 제13장 전자상거래

### 제13.1조 일반

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과 기회, 그 이용 및 개발 촉진의 중요성,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다.

### 제13.2조 다른 장과의 관계

이 장과 다른 장들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, 그 불합치의 한도 내에서 다른 장들이 우선한다.

### 제13.3조 관세<sup>1</sup>

각 당사국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현재 세계무역기구의 관세 미부과 관행<sup>2</sup>을 유지할 것이다.<sup>3</sup>

### 제13.4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

1. 어떠한 당사국도 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근거만으로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전자서명을 위한 법규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.
2. 각 당사국은 다음을 허용하는 전자서명을 위한 국내 법규를 유지한다.
  - 가. 전자상거래의 당사자가 적절한 전자서명과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는 것<sup>45</sup>, 그리고

---

<sup>1</sup> 이 장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전달이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또는 상품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양 당사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.

<sup>2</sup> 현재의 관행은 「세계무역기구 발리 각료회의 결정(WT/MIN(13)/32-WT/L/907)의 전자상거래 작업계획」 제5항과 합치되게 유지될 것이다.

<sup>3</sup> 양 당사국은 이 사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결정의 어떠한 변경과도 합치되게, 관행을 조정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.

<sup>4</sup>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한국의 경우, 인증의 방법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 의한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 기관에 의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- 나. 전자거래에 대한 자신의 전자 인증이 전자 인증에 대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전자 인증 기관이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
3. 각 당사국은 디지털 인증서 및 전자 서명의 상호 인정을 위하여 노력한다.
  4. 각 당사국은 사업 분야에서 디지털 인증서의 사용을 장려한다.

### 제13.5조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보호

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,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하고,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한다.

### 제13.6조 종이 없는 무역

1.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.
2. 각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모색한다.

### 제13.7조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력

1. 양 당사국은 특히 법과 규정, 규칙 및 기준, 그리고 우수 관행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사안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로 합의한다.
2.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 및 훈련 활동에서의 협력을 장려한다.
3. 양 당사국은 사업의 교류, 협력 활동 그리고 전자상거래 공동사업을 장려한다.
4. 양 당사국은 협조적인 방식으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 및 다자 포럼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.

### 제13.8조

---

<sup>5</sup>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중국의 경우, 전자거래의 전자서명이 제3당사자에 의하여 증명되기 위하여, 인증서비스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인증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한 공급자는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공인된 당국에 의하여 승인된다.

## 정의

이 장의 목적상,

**전자인증**이란 전자 통신 또는 전자 거래의 무결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전자서명에 참여한 당사자들에 대하여 신빙성과 신뢰성 검증을 제공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한다.

**전자서명**이란 데이터 메시지에 있거나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로서 데이터 메시지에 관한 서명자를 확인하고 그 서명자가 그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를 승인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 **데이터 메시지**란 전자적, 광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발생, 송신,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. 그리고

**무역행정문서**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.

### 제13.9조 분쟁해결의 비적용

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20장(분쟁해결)을 이용하지 아니한다.